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18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남인순 · 송재봉 · 이수진
백혜련 · 박희승 · 허종식
전용기 · 김문수 · 허성무
문진석 · 손명수 · 서미화
전진숙 · 김남근 · 박홍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임.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차의료이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
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
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
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차의료란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
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
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
터 제5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 기능 정착을 위하여 종합병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차의료”란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나.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다.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라.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마.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바.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2.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일차의료기관”이란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
2.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활용계획
3. 일차의료기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차의료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일차의료 연구개발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

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차의료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와 이용 형태
2. 일차의료 제공체계에 관한 사항
3. 일차의료기관 현황과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4. 일차의료 인력 현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그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차의료 서비스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현황, 일차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차의료 인력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련·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와 회송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간 교육·수련·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2. 성과 가산 수가
3. 의료취약지 지역 가산 수가
4. 그 밖에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차의료의 내용, 형태, 제공절차 등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2. 일차의료 교육 및 인력 양성
3. 일차의료 성과 분석
4.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 기능 정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지역의사회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일차의료기관 지원
2. 지역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원
3.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4. 일차의료 연구 지원
5. 일차의료에 관한 홍보와 정보 제공
6. 그 밖에 일차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일차의료 전달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달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강 주치의 제도)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